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26. 10.28.(수)]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8.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0. 15.

김우진・김원일・남재욱・문순규・박강우
박연정・박영주・박찬열・배명갑・서명일
이무식・전홍표・지상록・진형익
하경석 의원(15명)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10.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김우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본 방향과 친환경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입법예고(2026. 10. 15.~ 10. 21.)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 제정목적

○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름

○ 안 제3조 및 제4조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 안 제5조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 창원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6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정함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심의 절차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농업진흥 및 식량의 원활한 수급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바, 지역 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사무범위에 해당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정의를 함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무 규정에 부합함

○ 안 제5조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변경의 경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농업·농촌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창원시 농업·농촌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일반현황	**위원장** : 창원시장, **부위원장** : 제1부시장, 위원 중 1명 호선, **위원 수** : 24명
주요기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
심의내용	▸ 농림축산식품산업 예산 신청안 의결 ▸ 농업분야 분과별 보조·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 심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6조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확대, 생산·유통·수출 활성화, 생산비 보전, 농자재 구입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범위를 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026년 창원시 친환경농업분야 추진사업 현황(국비사업 제외)> (자료제공: 농업기술과)

사업명	2026년 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비	시비	기타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37,000		25,900	11,100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7,143		12,000	5,143
품질인증비 지원사업	50,000		50,000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0,000		40,000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38,000	11,400	26,600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9,857	1,380	5,520	2,957

○ 2026년 10월 기준 창원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수는 212호, 인증 면적은 144.19ha이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및 품질인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창원시 친환경농업 인증현황> 2026.10.기준 (자료제공: 농업기술과)

지역		인증건수(건)	농가수(호)	면적(ha)
창원시		108	212	144.19
인증별	유기농산물	13	33	23.58
	무농약농산물	**95**	**179**	**120.61**
	저농약농산물	0	0	0
지역별	**의창구**	**85**	**181**	**136.00**
	성산구	2	2	0.21
	마산합포구	17	25	6.96
	마산회원구	3	3	0.82
	진해구	1	1	0.20

○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법을 근거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안전한 농산물 소비,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